「병원성 바이러스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」 사업 2022년도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사업 공고

「병원성 바이러스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」(이하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)에서는 중화항체 및 항체 치료제 개발 기관(산・학・연・병)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'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사업'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내・외 수요기업(관)에서는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7월

강원테크노파크,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,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

1 사업개요

- 사 업 명
 - O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사업 (기술서비스 지원)
- 추진방향
 - O 연구결과물의 사업화 추진 이전단계에서 기술성 검증 또는 명확한 TPP (Target Product Profile) 설정을 통하여 성공확률이 높은 Target 및 초기 후보물질 발굴 및 검증 지원
 - O 산업화 역량이 부족한 비영리 연구기관과 국내 중소·벤처 기업이 보유한 중화항체 및 항체 치료제 관련 기초 연구성과물의 사업화 지원
- 지원 방법 및 대상
 - O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가 보유한 기술 및 장비를 활용하여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 및 중소·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중화항체 및 항체 치료제 초기 개발 단계 지원
- 지원 기간 및 지원 규모
 - O 2022년 7월 ~ 12월. (2개 기업 내외 6개 분야 지원; 기업당 5천 ~ 1억원 상당)
 - * 지원규모는 해당 금액 상당의 기술 및 인력지원으로 현금지원 불가
- 지원기관
 - O (주관) (재)강원테크노파크, (참여) (재)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,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

추가안내사항

-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- 지원대상 중 기업이 아닌 기관이 신청할 경우 개발 중인 물질 및 시제품의 개발 로드맵과 구체적 활용(사업화) 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함(선정평가 시 반영)
- 상기 지원규모는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가 의료연구개발기관(산·학·연·병)에 대한 기술 지원에 집행하는 연구개발비임
-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가 보유하지 않은 인프라가 요구되는 과제는 컨설팅 신청서 및 계획서 사전 검토 시 제외될 수 있음
- 다음의 경우 선정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
 - 개발지원센터 입주 및 강원도내 의료연구개발기관, 지방이전확약서 제출 기관
 - 과제 결과물의 가치평가를 통한 이익공유 약정(약정 비율 등에 따라 차별 적용)
 - 과제종료 후 결과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이익을 공유하는 약정(약정비율 등에 따라 차별 적용)
- 선정된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

2 사업내용 및 대상

■ 지원내용

O 감염병 의료 네트워크 기반 컨설팅 지원 * 지원규모 및 건수는 협의가능

지원 번호	지원분야	지원내용	지원 규모	비고
1	개발·사업화 전략 자문	• 중화항체 및 항체 치료제 개발·사업화 전략 컨설팅	-	-
2	투자 IR 고도화 자문	• 창업기업 또는 투자유치 계획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IR 컨설팅	-	-
3	공동 R&D 연계 지원	•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공동 추진기관인 (재)스크립 스코리아항체연구원 및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와 공동 R&D 연계 지원	-	-
4	항원/항체 설정 자문 등	• Phage Display 기반 항원설정, 유효물질(Hit) 발굴, 선도물질, 후보물질 확립 등 기술개발초기단계 컨설팅	-	-

- O Phage Display 기반 기술지원 * 지원규모 및 건수는 협의가능
- ※ 본 기술지원은 컨설팅자문(지원번호 4; 항원/항체 설정자문 등)과 연계하여 지원함 (기술지원 신청기업은 컨설팅 자문이 먼저 수행되도록 함께 지원 필요)
- ※ 후보항체 개발지원은 컨설팅, 스크리닝지원 및 항체 발현 정제 중복지원 필요 (지원번호 4, 5, 6; 신청서 중복신청필수)

지 원 번 호	지원분야	지원내용	지원 규모	비고
5	유효항체 스크리닝 지원	바이오패닝을 통한 유효항체(scFv) 스크리닝 및 유효성 검증지원 유효항체(scFv) 서열 정보 제공	2개 내·외	-
6	유효 항체 발현·정제 지원	선별 또는 기업에서 제공한 유효항체 정보(scFv 서열 등) 기반 발현 벡터 제작 지원 동물세포에서 유효항체 발현·검증·정제 지원	2개 내·외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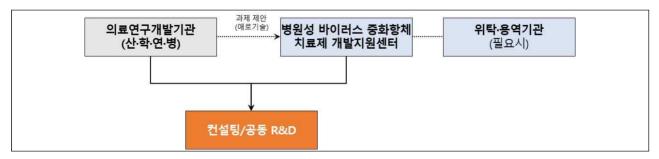
※ 개발지원센터가 보유하지 않은 인프라가 요구되는 과제는 컨설팅 신청서 검토시 제외될 수 있음

■ 지원대상

- O (우선지원) 중화항체 및 항체 치료제 개발 관련 강원도 소재 대학, 연구기관 및 기업(또는 지방 이전* 예정 기업)
 - * 연구계획서 접수 시 "지방이전확약서"를 제출하는 경우 강원도 소재 기업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며, 가점 부여
 - * 동 사업 지원 기간 내 강원도에 본사/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완료
- O 우선지원 대상이 없을 경우, 중화항체 및 항체 치료제 개발 관련 국내 소재 대학, 연구기관 및 기업을 선정

■ 지워방식

O 국내 중화항체 및 항체 치료제 개발 산·학·연·병의 연구제안 방식으로 추진



* 병원성 바이러스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는 R&D 지원을 추진하면서 외부 역량 활용이 필요할 경우 위탁기관(또는 연구제안 기관)을 통하여 위탁 또는 용역 가능

[※] 지원 내용은 당해연도 일정상 변경될 수도 있음

사업추진 일정 및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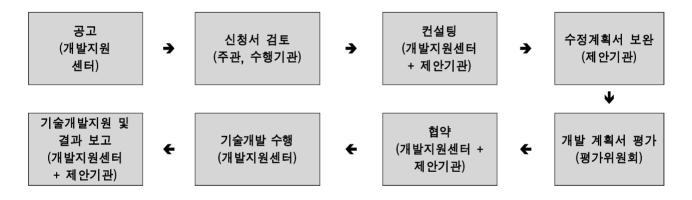
■ 추진 일정

3

추진일정	주요내용	
'22. 7월	과제 공고 및 신청서 접수	
'22. 7월 ~ 8월	신청서 검토	
'22. 8월 중	컨설팅 지원	
'22. 8월 중	계획서 보완 및 수립	
'22. 8 말	계획서 평가 및 협약	
'22. 8월 ~ '22. 12월	기술개발 지원, 결과보고	

[※]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음

■ 추진 절차



- O (공고) (재)강원테크노파크 및 참여기관,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, 제 안기관은 기술지원이 필요한 내용 작성 및 제출
- O (컨설팅) 과제의 범위 및 연구개발 전략 등 공유, 개발 방향 논의, 중화항체·항체 치료제 개발 방향 및 전략 설정, 성과물 공유* 방안 협 의
 - * (IP(지식재산권) 또는 profit 공유 등) 지원대상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적의 성과공유 방식 설정
 - * (제안기관 사업권 보장) IP(지식재산권) 공유 시 별도 협약을 통해, 제안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정

- O (수정계획서 보완) 컨설팅 등에서 보완된 내용으로 수정계획서 작성 제출
- O (신청서 평가 및 선정) 개발지원센터 내·외부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검토 및 대상 기업·기관 선정

평가항목	평가내용
기술성	·기존 기술대비 차별성, 독창성 등
사업성	·시장의 성장성 및 진입장벽 등
사업화 성공 가능성	·지원제품의 기술이전 가능성
기관 보유역량 및	・신청기관 (연구)수행 및 인프라 확보 역량
잠재역량	·신청기관 (개발 후)활용 역량
	·지역경제 활성화(가점 2점)
	* 강원도내 기업, 센터 입주기업 또는 지방이전확약서 제출
기대효과/파급효과	·신·변종 감염병 관련 분야(가점 2점)
	·성과공유율에 따라 차등 적용
	* 100%(3점), 75% ~ 100% 미맨(2점), 50% ~ 75% 미맨(1점)

- O (협약) 개발계획서, 비밀유지계약서, 성과물 공유 범위 등 서명(또는 날인) 후 서류 제출
- O (기술개발지원) 개발지원센터와 제안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추진
- O (결과보고서 작성) 기술개발 내용 및 성과 보고

4 신청기간 및 방법

■ 신청기간 : 2022. 7. 5. (화)부터 상시모집

■ 신청방법 : (첨부)사업신청서 작성 후 G-BizTP(http://gbiz.gwtp.or.kr/)에 신청

■ 신청서류

- O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사업 신청서 1부
- O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각 1부
- O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
- O 기업이전 확약서 1부(해당시)
- O 성과공유약정서 1부
- * 신청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하며, 과제 선정 후 원본 제출

■ 신청자격

- O 국·공립 연구기관
- O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- O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- O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

<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> 제17조(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) 1항과 2항을 준수해야 함

- O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-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항 적용

문의처

소 속	강원테크노파크	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
담당자	김범석 대리	송용범 책임연구원
연락처	070-4269-8956	033-250-8098
이메일	kbs86@gwtp.or.kr	songyb@skai.or.kr
기타	과제 일반 / 지원서 접수	서비스 지원 분야